

의안번호	제239호
------	-------

발의연월일

2024. 1. 3.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자
장순관 의원 7외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장순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39호
----------	-------

발의연월일 : 2024년 1월 3일
발의자 : 장순관, 이정순, 김영진
이길원, 박중수, 심완예
임종용, 홍원표 의원 (8인)

1. 제안이유

예산군에 거주하는 80세이상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신청·선정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라. 지원제외 및 지원회수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 「노인복지법」 제4조
 - 「의료급여법」 제3조의3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 다. 기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24. 1. 4. ~ 1. 11. [8일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2】
 - 4) 성별영향평가 : 【붙임 3】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예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예산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돋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노인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등급 외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
 4. 독거 노인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 보행기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노인 보행기 지원을 받을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1인 1대에 한정하여 노인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범위) 제4조의 노인 보행기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선정) ① 노인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대리인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 1】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 5. 29.>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

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이하 생략)

□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법률 제19297호, 2023. 3. 28., 일부개정]

-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조사, 확인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그 결과를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읍·면 로·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지급계좌			예금주	
구입내역	제품명		구입일자		
	제조업체		제품코드		
	구입가격		구입처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노인 보행기 구입 사실 여부)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판정결과 등급 외 A, B) · 의사소견서 1부 · 영수증(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보행기 사진 · 통장사본				

①, ②, ③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노인 보행기 구입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대리 신청인 경우)

예산군수 귀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읍·면 로·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사업 신청자 선발 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자관리, 보조금 지불 정산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등 ② 자격판정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및 차상위 증명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의사소견서 등 ③ 다른 법령 및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 이력
보유 및 이용기간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날로부터 5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자필 서명으로 한다.

예산군수 귀하

【불임 2】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주요내용)

- 비용 지원(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장순관 의원

【불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예산095							
정책명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이종구	전화번호	041-339-707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미/041-339-7912)								
의회사무과장 귀하								